

경기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제 정 2005. 4. 15
일부개정 2015. 4. 1
전부개정 2018. 4. 26
전부개정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1. 24
일부개정 2021. 8. 13
일부개정 2022. 8. 31
일부개정 2023. 7. 28
일부개정 2024. 12. 12
일부개정 2025. 12. 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장과 소속 구성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에게 적용되며, 경기연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원장 또는 연구원 소속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가 내지 마에서 열거된 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스톱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 ③ 원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

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충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연구원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총무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며,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2인 이상 지정 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사건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고충 처리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접수신청서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며, 사이버신고센터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고충상담원의 교육 등) ①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수강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신규로 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총무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8조(고충의 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제8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사건 통보 및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사건 통보 및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및 반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① 원장은 연구원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② 원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연구원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자(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조사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나 별도 조사자를 원칙

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이 조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1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⑧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⑨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⑪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원장 또는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경기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인트라넷 등을 통한 피해자 정보 접근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③ 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원장, 소속 부서의 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을 포함하여 노사 동수(각 2인)로 구성하고, 위원 중 2인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단, 위원은 한쪽 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1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위원장은 공동의장으로 부위원장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장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통지) 원장은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 한다.
- ③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 ⑥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4. 15)

부 칙 (2015. 4. 1)

부 칙 (2018. 4. 26)

부 칙 (2020. 3. 31)

부 칙 (2020. 11. 24)

부 칙 (2021. 8. 13)

부 칙 (2022. 8. 31)

부 칙 (2023. 7. 28.)

부 칙 (2024. 12.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매뉴얼의 개정) 이 지침 제4조에 따라 마련된 「경기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처리 결과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상담 종결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접수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귀중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접수번호							
확인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의사 확인	사건 (성평등가족부 통보 □, 수사기관 신고 □)에 동의합니다.()			사건 (성평등가족부 통보 □, 수사기관 신고 □)에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 :						
* 주: 수사기관 신고의 동의여부 확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근거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한함 위 확인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신고한 사건을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위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귀중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경기연구원장 (인)